

禁止垄断协议规定

(2023年3月10日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令第65号公布 自2023年4月15日起施行)

第一条 为了预防和制止垄断协议，根据《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以下简称反垄断法），制定本规定。

第二条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以下简称市场监管总局）负责垄断协议的反垄断统一执法工作。

市场监管总局根据反垄断法第十三条第二款规定，授权各省、自治区、直辖市市场监督管理部门（以下简称省级市场监管部门）负责本行政区域内垄断协议的反垄断执法工作。

本规定所称反垄断执法机构包括市场监管总局和省级市场监管部门。

第三条 市场监管总局负责查处下列垄断协议：

- (一) 跨省、自治区、直辖市的；
- (二) 案情较为复杂或者在全国有重大影响的；
- (三) 市场监管总局认为有必要直接查处的。

前款所列垄断协议，市场监管总局可以指定省级市场监管部门查处。

省级市场监管部门根据授权查处垄断协议时，发现不属于本部门查处范围，或者虽属于本部门查处范围，但有必要由市场监管总局查

독점협약의 금지규정

(2023년 3월 10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령 제65호 공포, 2023년 4월 15일 시행)

제1조 독점협약행위를 예방하고 제지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이하 '반독점법'으로 약칭)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시장총국'으로 약칭)은 독점협약의에 대한 통일 반독점 법집행업무를 담당한다.

시장총국은 반독점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각 성·자치구·직할시의 시장감독관리부서(이하 '성급 시장감독관리부서'로 약칭)에 권한을 부여하고 당해 행정구역 내 독점협약의에 대한 반독점 법집행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본 규정에서 말하는 반독점 법집행기구는 시장총국과 성급 시장감독관리부서를 포함한다.

제3조 시장총국은 아래 열거한 독점협약의 조사처리를 담당한다:

- (1) 성·자치구·직할시의 경계를 넘는 경우;
- (2) 안건의 정황이 비교적 복잡하거나 전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3) 시장총국이 직접 조사처리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항에 열거한 독점협약의는 시장총국이 성급시장감독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조사처리하게 할 수 있다.

성급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수권에 근거하여 독점협약의에 대해 조사처리 할 때, 당해 부서의 조사처리 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발견하거나,

处的，应当及时向市场监管总局报告。

第四条 反垄断执法机构查处垄断协议时，应当平等对待所有经营者。

第五条 垄断协议是指排除、限制竞争的协议、决定或者其他协同行为。

协议或者决定可以是书面、口头等形式。

其他协同行为是指经营者之间虽未明确订立协议或者决定，但实质上存在协调一致的行为。

第六条 认定其他协同行为，应当考虑下列因素：

- (一) 经营者的市场行为是否具有一致性；
- (二) 经营者之间是否进行过意思联络或者信息交流；
- (三) 经营者能否对行为的一致性作出合理解释；
- (四) 相关市场的市场结构、竞争状况、市场变化等情况。

第七条 相关市场是指经营者在一定时期内就特定商品或者服务（以下统称商品）进行竞争的商品范围和地域范围，包括相关商品市场和地域市场。

界定相关市场应当从需求者角度进行需求替代分析。当供给替代对经营者行为产生的竞争约束类似于需求替代时，也应当考虑供给替代。

당해 부서의 조사처리 범위에 속하지만 시장총국이 조사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장총국에 보고해야 한다.

제4조 반독점 법집행기구는 독점협약에 대한 조사처리시 모든 경영자를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제5조 독점협약이란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협의·결정 또는 기타 협동행위를 말한다.

협의 또는 결정은 서면, 구두 등의 형식도 가능하다.

기타 협동행위는 경영자 간에 명확하게 협의 또는 결정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실질적으로 협조·조정·일치의 효과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 기타 협동행위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아래 열거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 (1) 경영자의 시장행위에 일치성이 있는지 여부;
- (2) 경영자간 의사연락 또는 정보교류를 진행했는지 여부;
- (3) 경영자가 행위의 일치성에 대해 합리적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4) 관련시장의 시장구조, 경쟁상황, 시장변화 등 상황.

제7조 관련 시장은 관련 상품 시장 및 관련 지역 시장을 포함하여 경영자가 일정 기간동안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이하 '상품'으로 통칭)를 놓고 경쟁하는 상품 범위 및 지역 범위를 말한다.

관련 시장을 확정하려면 수요자 관점에서 수요 대체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공급 대체가 경영자의 행동에 미치는 경쟁 제약이 수요 대체와 유사한 경우 공급 대체도 고려한다.

界定相关商品市场，从需求替代角度，可以考虑需求者对商品价格等因素变化的反应、商品的特征与用途、销售渠道等因素。从供给替代角度，可以考虑其他经营者转产的难易程度、转产后所提供商品的市场竞争力等因素。

界定平台经济领域相关商品市场，可以根据平台一边的商品界定相关商品市场，也可以根据平台所涉及的多边商品，将平台整体界定为一个相关商品市场，或者分别界定多个相关商品市场，并考虑各相关商品市场之间的相互关系和影响。

界定相关地域市场，从需求替代角度，可以考虑商品的运输特征与成本、多数需求者选择商品的实际区域、地域间的贸易壁垒等因素。从供给替代角度，可以考虑其他地域经营者供应商品的及时性与可行性等因素。

第八条 禁止具有竞争关系的经营者就固定或者变更商品价格达成下列垄断协议：

- (一) 固定或者变更价格水平、价格变动幅度、利润水平或者折扣、手续费等其他费用；
- (二) 约定采用据以计算价格的标准公式、算法、平台规则等；
- (三) 限制参与协议的经营者的自主定价权；
- (四) 通过其他方式固定或者变更价格。

관련 상품 시장을 획정함에 있어 수요 대체 관점에서 상품 가격과 같은 요인의 변화에 대한 수요자의 반응, 상품의 특성 및 용도, 판매 경로와 같은 요인을 고려할 수 있다. 공급 대체의 관점에서 다른 경영자의 생산 전환의 어려움, 생산 전환 후 제공되는 상품의 시장 경쟁력 및 기타 요인을 고려할 수 있다.

플랫폼 경제 분야의 관련 상품 시장을 획정하려면 플랫폼 한쪽의 상품에 따라 관련 상품 시장을 획정할 수 있으며, 플랫폼과 관련된 다자 상품에 따라 플랫폼 전체를 하나의 관련 상품 시장으로 획정하거나 여러 관련 상품 시장을 별도로 획정하고 각 관련 상품 시장 간의 상호 관계와 영향을 고려할 수 있다.

관련 지역 시장을 획정함에 있어 수요 대체의 관점에서 상품의 운송 특성과 비용, 대부분의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하는 실제 지역, 지역 간 무역 장벽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공급 대체의 관점에서 다른 지역 경영자의 상품 공급의 적시성과 타당성과 같은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제8조 경쟁관계에 있는 경영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 (이하 '상품'으로 통칭)의 가격에 대해 아래 열거한 독점협의를 달성하는 것을 금지한다:

- (1) 가격수준, 가격변동 폭, 이윤수준 또는 할인·수수료 등 기타비용을 고정하거나 변경;
- (2) 가격을 계산하는 표준공식, 알고리즘, 플랫폼 규칙 등을 채택하기로 약정;
- (3) 협의에 참여하는 경영자의 자주적 가격결정권을 제한;
- (4) 기타의 방식을 통해 가격을 고정하거나 변경.

本规定所称具有竞争关系的经营者，包括处于同一相关市场进行竞争的实际经营者和可能进入相关市场进行竞争的潜在经营者。

第九条 禁止具有竞争关系的经营者就限制商品的生产数量或者销售数量达成下列垄断协议：

- (一) 以限制产量、固定产量、停止生产等方式限制商品的生产数量，或者限制特定品种、型号商品的生产数量；
- (二) 以限制商品投放量等方式限制商品的销售数量，或者限制特定品种、型号商品的销售数量；
- (三) 通过其他方式限制商品的生产数量或者销售数量。

第十条 禁止具有竞争关系的经营者就分割销售市场或者原材料采购市场达成下列垄断协议：

- (一) 划分商品销售地域、市场份额、销售对象、销售收入、销售利润或者销售商品的种类、数量、时间；
- (二) 划分原料、半成品、零部件、相关设备等原材料的采购区域、种类、数量、时间或者供应商；
- (三) 通过其他方式分割销售市场或者原材料采购市场。

前款关于分割销售市场或者原材料采购市场的规定适用于数据、技术和服务等。

第十一条 禁止具有竞争关系的经营者就限制购买新技术、新设备或者限制开发新技术、新产品达成下列垄断协议：

이 규정에서 언급된 경쟁 관계에 있는 경영자에는 동일한 관련 시장에서 경쟁하는 실제 경영자와 경쟁을 위해 관련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잠재적 경영자가 포함된다.

제9조 경쟁관계에 있는 경영자가 상품의 생산량 또는 판매량 제한에 대해 아래 열거한 독점협의를 달성하는 것을 금지한다:

- (1) 생산량 제한·생산량 고정·생산중지 등의 방식으로 상품의 생산량을 제한하거나 특정 품종·모델의 생산량을 제한;
- (2) 상품 출하량 제한 등의 방식으로 상품의 판매량을 제한하거나 특정 품종·모델 상품의 판매량을 제한;
- (3) 기타의 방식으로 상품의 생산량 또는 판매량을 제한.

제10조 경쟁관계에 있는 경영자가 판매시장 또는 원재료 구매시장 분할에 대해 아래 열거한 독점협의를 달성하는 것을 금지한다:

- (1) 상품판매 지역·시장점유율·판매대상·판매수입·판매이윤 또는 판매상품의 종류·수량·시간을 구분;
- (2) 원료·반제품·부품·관련 설비 등 원재료의 구매지역·종류·수량·시간 또는 공급상을 구분;
- (3) 기타의 방식으로 판매시장 또는 원재료 구매시장을 분할.

판매 시장 또는 원자재 조달 시장 분할에 관한 전항의 규정은 데이터, 기술 및 서비스 등에 적용된다.

제11조 경쟁관계에 있는 경영자가 신기술·신설비 구매 제한 또는 신기술·신상품 개발 제한에 대해 아래 열거한 독점협의를 달성하는 것을 금지한다 :

<p>(一) 限制购买、使用新技术、新工艺； (二) 限制购买、租赁、使用新设备、新产品； (三) 限制投资、研发新技术、新工艺、新产品； (四) 拒绝使用新技术、新工艺、新设备、新产品； (五) 通过其他方式限制购买新技术、新设备或者限制开发新技术、新产品。</p> <p>第十二条 禁止具有竞争关系的经营者就联合抵制交易达成下列垄断协议：</p> <p>(一) 联合拒绝向特定经营者供应或者销售商品； (二) 联合拒绝采购或者销售特定经营者的商品； (三) 联合限定特定经营者不得与其具有竞争关系的经营者进行交易； (四) 通过其他方式联合抵制交易。</p> <p>第十三条 具有竞争关系的经营者不得利用数据和算法、技术以及平台规则等，通过意思联络、交换敏感信息、行为协调一致等方式，达成本规定第八条至第十二条规定的垄断协议。</p> <p>第十四条 禁止经营者与交易相对人就商品价格达成下列垄断协议：</p> <p>(一) 固定向第三人转售商品的价格水平、价格变动幅度、利润水平或者折扣、手续费等其他费用； (二) 限定向第三人转售商品的最低价格，或者通过限定价格变</p>	<p>(1) 신기술·신공예의 구매·사용을 제한; (2) 신설비·신상품의 구매·임대·사용을 제한 (3) 신기술·신공예·신상품의 투자·연구개발을 제한 ; (4) 신기술·신공예·신설비·신상품의 사용을 거절 ; (5) 기타 방식으로 신기술·신설비의 구매를 제한하거나, 신기술·신상품의 개발을 제한.</p> <p>제12조 경쟁관계에 있는 경영자가 연합하여 거래를 거절하는 것에 대해 아래 열거한 독점협의를 달성하는 것을 금지한다:</p> <p>(1) 특정 경영자에 대한 상품 공급 또는 상품 판매를 연합하여 거절; (2) 특정 경영자의 상품에 대한 구매 또는 판매를 연합하여 거절; (3) 특정 경영자에게 그 경쟁관계에 있는 경영자와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연합하여 제한; (4) 기타의 방식으로 연합하여 거래를 제한.</p> <p>제13조 경쟁 관계에 있는 경영자는 데이터, 알고리즘, 기술 및 플랫폼 규칙을 사용하여 의사 전달, 민감한 정보 교환, 공동 행동 프로토콜 등의 수단을 통해 본 규정 제8조 내지 제12조에 규정된 독점협의를 달성해서는 아니된다.</p> <p>제14조 경영자가 거래상대방과 상품가격에 대하여 아래 열거한 독점협의를 달성하는 것을 금지한다:</p> <p>(1) 제3자에게 전매하는 상품의 가격 수준·가격 변동폭·이윤수준 또는 할인·수수료 등 기타 비용을 고정; (2)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상품의 최저가격을 제한하거나, 가격변</p>
--	--

动幅度、利润水平或者折扣、手续费等其他费用限定向第三人转售商品的最低价格；

(三) 通过其他方式固定转售商品价格或者限定转售商品最低价格。

对前款规定的协议，经营者能够证明其不具有排除、限制竞争效果的，不予禁止。

第十五条 经营者不得利用数据和算法、技术以及平台规则等，通过对价格进行统一、限定或者自动化设定转售商品价格等方式，达成本规定第十四条规定的垄断协议。

第十六条 不属于本规定第八条至第十五条所列情形的其他协议、决定或者协同行为，有证据证明排除、限制竞争的，应当认定为垄断协议并予以禁止。

前款规定的垄断协议由市场监管总局负责认定，认定时应当考虑下列因素：

- (一) 经营者达成、实施协议的事实；
- (二) 市场竞争状况；
- (三) 经营者在相关市场中的市场份额及其对市场的控制力；
- (四) 协议对商品价格、数量、质量等方面的影响；
- (五) 协议对市场进入、技术进步等方面的影响；
- (六) 协议对消费者、其他经营者的影响；
- (七) 与认定垄断协议有关的其他因素。

第十七条 经营者与交易相对人达成协议，经营者能够证明参与协

동폭·이윤수준 또는 할인·수수료 등 기타비용의 제한을 통해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상품의 최저가격을 제한;

(3) 기타의 방식으로 재판매상품의 가격을 고정하거나 전매상품의 최저가격을 제한

전항에 규정된 협의에 대해 경영자가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효과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금지되지 않는다.

제15조 경영자는 데이터, 알고리즘, 기술 및 플랫폼 규칙 등을 사용하여 재판매 상품의 가격 통일 및 제한 또는 자동설정 등의 방식으로 본 규정 제14조에 규정된 독점협의를 달성해서는 아니된다.

제16조 본 규정 제8조부터 제15조에 열거된 정형에 속하지 않는 기타의 협의·결정 또는 협동행위가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경우, 독점협의로 인정하여 금지해야 한다.

전항에 규정한 독점협의를 인정은 시장총국이 담당하며, 독점협의 인정시 아래 열거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 (1) 경영자가 협의를 달성·실시한 사실;
- (2) 시장의 경쟁상황;
- (3) 경영자의 관련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및 그 경영자의 시장에 대한 통제능력;
- (4) 협이가 상품 가격·수량·품질 등 방면에 미치는 영향
- (5) 협이가 시장진입·기술진보 등 방면에 미치는 영향;
- (6) 협이가 소비자·기타 경영자에 미치는 영향;
- (7) 독점협의인정과 관련되는 기타 요소

제17조 경영자와 거래 상대방이 협의에 도달하였더라도 경영자가

议的经营者在相关市场的市场份额低于市场监管总局规定的标准，并符合市场监管总局规定的其他条件的，不予禁止。

第十八条 反垄断法第十九条规定的经营者组织其他经营者达成垄断协议，包括下列情形：

(一) 经营者不属于垄断协议的协议方，在垄断协议达成或者实施过程中，对协议的主体范围、主要内容、履行条件等具有决定性或者主导作用；

(二) 经营者与多个交易相对人签订协议，使具有竞争关系的交易相对人之间通过该经营者进行意思联络或者信息交流，达成本规定第八条至第十三条的垄断协议。

(三) 通过其他方式组织其他经营者达成垄断协议。

反垄断法第十九条规定的经营者为其他经营者达成垄断协议提供实质性帮助，包括提供必要的支持、创造关键性的便利条件，或者其他重要帮助。

第十九条 经营者能够证明被调查的垄断协议属于反垄断法第二十条规定情形的，不适用本规定第八条至第十六条、第十八条的规定。

第二十条 反垄断执法机构认定被调查的垄断协议是否属于反垄断法第二十条规定的情形，应当考虑下列因素：

(一) 协议实现该情形的具体形式和效果；

협의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시장총국이 규정한 기준보다 낮고 시장총국이 규정한 기타 조건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금지되지 않는다.

제18조 반독점법 제19조에 규정된 경영자가 다른 경영자를 조직하여 독점협의를 달성하는 것은 다음 상황을 포함한다.

(1) 경영자가 독점협의를 일방에 속하지 않으며, 독점협의를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협의의 주체범위, 주요내용, 이행조건 등에 결정적 또는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경우

(2) 경쟁관계에 있는 거래상대방이 경영자를 통해 의사연락 또는 정보교류를 할 수 있도록 복수의 거래상대방과 협의를 체결하여 본 규정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독점협의를 체결하는 경우

(3) 기타 다른 방법을 통해 다른 경영자를 조직하여 독점 협의를 체결하는 경우

반독점법 제19조에 규정된 경영자가 다른 경영자에게 독점협의를 체결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 중요한 편의 조건 조성 또는 기타 중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경영자가 조사대상인 독점협의를 반독점법 제20조 규정의 정형에 속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본 규정 제8조부터 제16조, 제18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 반독점 법집행기구가 조사대상인 독점협의를 반독점법 제15조에 규정된 정형에 속하는지 여부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아래 열거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1) 협의가 해당정형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형식과 효과;

- (二) 协议与实现该情形之间的因果关系；
- (三) 协议是否是实现该情形的必要条件；
- (四) 其他可以证明协议属于相关情形的因素。

反垄断执法机构认定消费者能否分享协议产生的利益，应当考虑消费者是否因协议的达成、实施在商品价格、质量、种类等方面获得利益。

第二十一条 行业协会应当加强行业自律，引导本行业的经营者依法竞争，合规经营，维护市场竞争秩序。禁止行业协会从事下列行为：

- (一) 制定、发布含有排除、限制竞争内容的行业协会章程、规则、决定、通知、标准等；
- (二) 召集、组织或者推动本行业的经营者达成含有排除、限制竞争内容的协议、决议、纪要、备忘录等；
- (三) 其他组织本行业经营者达成或者实施垄断协议的行为。

本规定所称行业协会是指由同行业经济组织和个人组成，行使行业服务和自律管理职能的各种协会、学会、商会、联合会、促进会等社会团体法人。

第二十二条 反垄断执法机构依据职权，或者通过举报、上级机关交办、其他机关移送、下级机关报告、经营者主动报告等途径，发现涉嫌垄断协议。

- (2) 협의와 해당정형의 실현간 인과관계;
- (3) 협의가 해당 정형 실현에 필요요건인지 여부;
- (4) 협의가 관련 정형에 속함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요소.

반독점 법집행기구가 협의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소비자가 향유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소비자가 협의의 달성·실시로 인해 상품가격·품질·종류 등 방면에서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제21조 업계 협회는 업계 자율을 강화하고 업계 경영자가 법에 따라 경쟁하고 규정을 준수하며 시장 경쟁 질서를 유지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업계협회가 아래 열거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 (1)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업계협회의 정관·규칙·결정·통지·표준 등을 제정, 발표;
- (2) 당해 업계의 경영자가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협의·결의·요록·비망록 등을 달성하도록 소집·조직 또는 조장;
- (3) 기타 당해 업계의 경영자가 독점협의를 달성하거나 실시하도록 조직하는 행위

본 규정에서 업계협회란 동일한 업종의 경제조직과 개인으로 구성되어, 업계 서비스와 자율관리 기능을 하는 각종 협회·학회·상회·연합회·촉진회 등 사회단체 법인을 말한다.

제22조 반독점 법집행기구는 직권으로, 또는 신고·상급기관의 지시·다른 기관의 이송·하급기관의 보고·경영자의 자진신고 등의 경로를 통해 독점협의 혐의를 발견한다.

第二十三条 举报采用书面形式并提供相关事实和证据的，反垄断执法机构应当进行必要的调查。书面举报一般包括下列内容：

- (一) 举报人的基本情况；
- (二) 被举报人的基本情况；
- (三) 涉嫌垄断协议的相关事实和证据；
- (四) 是否就同一事实已向其他行政机关举报或者向人民法院提起诉讼。

反垄断执法机构根据工作需要，可以要求举报人补充举报材料。

对于采用书面形式的实名举报，反垄断执法机构在案件调查处理完毕后，可以根据举报人的书面请求依法向其反馈举报处理结果。

第二十四条 反垄断执法机构经过对涉嫌垄断协议的必要调查，符合下列条件的，应当立案：

- (一) 有证据初步证明经营者达成垄断协议；
- (二) 属于本部门查处范围；
- (三) 在给予行政处罚的法定期限内。

省级市场监管部门应当自立案之日起七个工作日内向市场监管总局备案。

第二十五条 市场监管总局在查处垄断协议时，可以委托省级市场监管部门进行调查。

省级市场监管部门在查处垄断协议时，可以委托下级市场监管部

제23조 서면으로 신고하고 관련 사실과 증거를 제공한 경우, 반독점 법집행기구는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한다. 서면신고는 일반적으로 아래 열거한 내용을 포함한다:

- (1) 신고인의 기본 상황;
- (2) 피신고인의 기본 상황;
- (3) 독점협의 혐의와 관련된 사실과 증거;
- (4) 동일한 사실에 대해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 신고했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지 여부.

반독점 법집행기구는 업무의 필요에 따라 신고인에게 신고자료의 보충을 요구할 수 있다.

서면 형태의 실명 신고의 경우, 반독점법 집행 기관은 사건 조사 및 처리가 완료된 후 신고자의 서면 요청에 따라 신고 및 처리 결과를 법률에 따라 피드백할 수 있다.

제24조 반독점 법집행기구는 독점협의 혐의에 대해 필요한 조사를 거쳐 아래의 요건에 부합하며 마땅히 입안해야 한다.

- (1) 경영자가 독점 협의를 체결했다는 기초 증거가 있는 경우
- (2) 해당 부서의 조사 및 처리 범위에 속하는 경우
- (3) 행정처분의 법적 기한 내에 있는 경우

성급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입안일로부터 7 업무일 이내에 시장총국에게 보고하고 비치해야 한다.

제25조 시장총국은 독점협의에 대한 조사처리시 성급 시장감독관리부서에 조사의 진행을 위탁할 수 있다.

성급 시장감독관리부서는 독점협의에 대한 조사처리시 하급 시장

门进行调查。

受委托的市场监管部门在委托范围内，以委托机关的名义实施调查，不得再委托其他行政机关、组织或者个人进行调查。

第二十六条 省级市场监管部门查处垄断协议时，可以根据需要商请相关省级市场监管部门协助调查，相关省级市场监管部门应当予以协助。

第二十七条 反垄断执法机构对垄断协议进行行政处罚的，应当在作出行政处罚决定之前，书面告知当事人拟作出的行政处罚内容及事实、理由、依据，并告知当事人依法享有的陈述权、申辩权和要求听证的权利。

第二十八条 反垄断执法机构在告知当事人拟作出的行政处罚决定后，应当充分听取当事人的意见，对当事人提出的事实、理由和证据进行复核。

第二十九条 反垄断执法机构对垄断协议作出行政处罚决定，应当依法制作行政处罚决定书，并加盖本部门印章。

行政处罚决定书的内容包括：

- (一) 当事人的姓名或者名称、地址等基本情况；
- (二) 案件来源及调查经过；
- (三) 违反法律、法规、规章的事实和证据；
- (四) 当事人陈述、申辩的采纳情况及理由；
- (五) 行政处罚的内容和依据；

감독관리부서에 조사의 진행을 위탁할 수 있다.

위탁받은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위탁범위 내에서 위탁기관의 명의로 조사를 실시하며, 다른 행정기관·조직 또는 개인에게 조사의 진행을 재위탁하면 안 된다.

제26조 성급 시장감독관리부서는 독점협약에 대한 조사처리시, 수요에 따라 관련 성급 시장감독관리부서에 조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성급 시장감독관리부서는 협조해야 한다.

제27조 반독점법 집행 기관이 독점 협약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 결정 전에 당사자에게 처분의 내용 및 사실, 이유, 근거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당사자가 법에 따라 향유하는 진술권, 변호권 및 청문요구권을 알려야 한다.

제28조 반독점법 집행 기관은 당사자에게 행정 처벌 결정을 통지한 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당사자가 제출한 사실, 이유 및 증거를 검토해야 한다.

제29조 반독점법 집행기구가 독점협약에 대해 행정처벌을 결정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벌결정서를 작성하고 부서 날인을 거쳐야 한다.

행정처벌결정서의 내용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 등 기본상황;
- (2) 안건의 출처 및 조사경과;
- (3) 법률, 법규, 규정을 위반한 사실과 증거;
- (4) 당사자 진술·항변의 채택 상황 및 이유;
- (5) 행정처벌의 내용 및 근거;

(六) 行政处罚的履行方式和期限；
(七) 申请行政复议、提起行政诉讼的途径和期限；
(八) 作出行政处罚决定的反垄断执法机构的名称和作出决定的日期。

第三十条 反垄断执法机构认定被调查的垄断协议属于反垄断法第二十条规定情形的，应当终止调查并制作终止调查决定书。终止调查决定书应当载明协议的基本情况、适用反垄断法第二十条的依据和理由等。

反垄断执法机构作出终止调查决定后，因情况发生重大变化，导致被调查的协议不再符合反垄断法第二十条规定情形的，反垄断执法机构应当依法开展调查。

第三十一条 涉嫌垄断协议的经营者在被调查期间，可以提出中止调查申请，承诺在反垄断执法机构认可的期限内采取具体措施消除行为影响。

中止调查申请应当以书面形式提出，并由经营者负责人签字并盖章。申请书应当载明下列事项：

- (一) 涉嫌垄断协议的事实；
- (二) 承诺采取消除行为后果的具体措施；
- (三) 履行承诺的时限；
- (四) 需要承诺的其他内容。

- (6) 행정처벌의 이행방식과 기한;
- (7) 행정재심의 신청, 행정소송제기의 경로와 기한;
- (8) 행정처벌결정을 한 반독점 법집행기구의 명칭과 결정일.

제30조 반독점 법집행기구가 조사대상인 독점협약이 반독점법 제20조 규정의 정형에 속한다고 인정한 경우, 조사를 종결하고 조사종결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조사종결결정서에는 협약의 기본상황, 반독점법 제20조를 적용하는 근거 및 이유 등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반독점 법집행기구가 조사종결 결정을 한 후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함으로써 인해 조사대상인 협약이 반독점법 제20조 규정의 정형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반독점 법집행기구는 조사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제31조 독점협약 혐의가 있는 경영자는 조사받는 기간 동안 조사중지를 신청하고 반독점 법집행기구가 인가한 기한 내에 행위의 영향을 제거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할 수 있다.

조사중지 신청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경영자의 책임자가 서명하고 날인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아래 열거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 (1) 독점협약 혐의의 사실;
- (2) 행위결과를 제거하는 구체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
- (3) 약속이행 시한;
- (4) 약속이 필요한 기타 내용.

第三十二条 反垄断执法机构根据被调查经营者的中止调查申请，在考虑行为的性质、持续时间、后果、社会影响、经营者承诺的措施及其预期效果等具体情况后，决定是否中止调查。

反垄断执法机构对涉嫌垄断协议调查核实后，认为构成垄断协议的，不得中止调查，应当依法作出处理决定。

对于符合本规定第八条至第十条规定的涉嫌垄断协议，反垄断执法机构不得接受中止调查申请。

第三十三条 反垄断执法机构决定中止调查的，应当制作中止调查决定书。

中止调查决定书应当载明被调查经营者涉嫌达成垄断协议的事实、承诺的具体内容、消除影响的具体措施、履行承诺的时限以及未履行或者未完全履行承诺的法律后果等内容。

第三十四条 决定中止调查的，反垄断执法机构应当对经营者履行承诺的情况进行监督。

经营者应当在规定的时限内向反垄断执法机构书面报告承诺履行情况。

第三十五条 反垄断执法机构确定经营者已经履行承诺的，可以决定终止调查，并制作终止调查决定书。

终止调查决定书应当载明被调查经营者涉嫌垄断协议的事实、作

제32조 반독점 법집행기구는 피조사경영자의 조사중지 신청에 근거하여, 행위의 성질·지속시간·결과·사회에 대한 영향·경영자가 약속한 조치 및 그 기대효과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한 후, 조사중지 여부를 결정한다.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독점협약 혐의를 조사·확인한 후 독점협약의 성립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를 중단할 수 없으며 법에 따라 처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본 규정 제8조부터 제10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독점협약 혐의에 대해서는, 반독점 법집행기구는 조사중지신청을 접수해서는 안 된다.

제33조 반독점 법집행기구가 조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 조사중지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조사중지결정서에는 피조사경영자의 독점협약달성 혐의의 사실,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 영향을 제거하는 구체적인 조치, 약속이행 시한 및 약속의 미이행 또는 완전하지 않은 이행시 법적 결과 등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제34조 조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 반독점 법집행기구는 경영자의 약속이행 상황에 대해 감독해야 한다.

경영자는 규정된 시한 내에 반독점 법집행기구에 서면으로 약속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35조 반독점 법집행기구는 경영자가 약속을 이행했음을 확인한 경우, 조사종결 결정을 할 수 있고, 조사종결결정서를 작성한다.

조사종결결정서에는 피조사경영자의 독점협약 혐의의 사실·조사중

出中止调查决定的情况、承诺的具体内容、履行承诺的情况、监督情况等内容。

有下列情形之一的，反垄断执法机构应当恢复调查：

- (一) 经营者未履行或者未完全履行承诺的；
- (二) 作出中止调查决定所依据的事实发生重大变化的；
- (三) 中止调查决定是基于经营者提供的不完整或者不真实的信息作出的。

第三十六条 经营者涉嫌违反本规定的，反垄断执法机构可以对其法定代表人或者负责人进行约谈。

约谈应当指出经营者涉嫌达成垄断协议的问题，听取情况说明，开展提醒谈话，并可以要求其提出改进措施，消除行为危害后果。

经营者应当按照反垄断执法机构要求进行改进，提出消除行为危害后果的具体措施、履行时限等，并提交书面报告。

第三十七条 经营者达成或者组织其他经营者达成垄断协议，或者为其他经营者达成垄断协议提供实质性帮助，主动向反垄断执法机构报告有关情况并提供重要证据的，可以申请依法减轻或者免除处罚。

经营者应当在反垄断执法机构行政处罚告知前，向反垄断执法机构提出申请。

申请材料应当包括以下内容：

지 결정이 내려진 사실·약속의 구체적인 내용·약속이행의 상황·감독 상황 등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아래 열거한 정형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반독점 법집행기구는 조사를 재개해야 한다 :

- (1) 경영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 (2) 조사중지 결정의 근거가 된 사실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 (3) 조사중지 결정이 경영자가 제공한 불완전하거나 진실되지 않은 정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

제36조 경영자가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반독점법 집행 기관은 법정 대리인 또는 책임자를 면담할 수 있다.

면담에서 경영자가 독점 협의를 체결한 것으로 의심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상황 설명을 듣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대화를 수행하고, 행위 위험의 결과를 제거하기 위한 개선 조치를 제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경영자는 반독점법 집행 기관의 요구 사항에 따라 개선하고 행동의 결과를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와 이행 기한 등을 제시하고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7조 경영자가 다른 경영자를 조직하여 독점협의를 달성하거나 다른 경영자가 독점협의를 달성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주도적으로 반독점법 집행기구에 신고하고 중요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법에 의견 처벌의 감경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경영자는 반독점법 집행기구가 행정처벌을 통지하기 전에 반독점법 집행기구에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 자료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一) 垄断协议有关情况的报告，包括但不限于参与垄断协议的经营者的经营者、涉及的商品范围、达成协议的内容和方式、协议的具体实施情况、是否向其他境外执法机构提出申请等；

(二) 达成或者实施垄断协议的重要证据。重要证据是指反垄断执法机构尚未掌握的，能够对立案调查或者对认定垄断协议起到关键性作用的证据。

经营者的法定代表人、主要负责人和直接责任人员对达成垄断协议负有个人责任的，适用本条规定。

第三十八条 经营者根据本规定第三十七条提出申请的，反垄断执法机构应当根据经营者主动报告的时间顺序、提供证据的重要程度以及达成、实施垄断协议的有关情况，决定是否减轻或者免除处罚。

第三十九条 省级市场监管部门作出不予行政处罚决定、中止调查决定、恢复调查决定、终止调查决定或者行政处罚告知前，应当向市场监管总局报告，接受市场监管总局的指导和监督。

省级市场监管部门向被调查经营者送达不予行政处罚决定书、中止调查决定书、恢复调查决定书、终止调查决定书或者行政处罚决定书后，应当在七个工作日内向市场监管总局备案。

第四十条 反垄断执法机构作出行政处理决定后，依法向社会公布。行政处罚信息应当依法通过国家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向社会公示。

(1) 독점협약에 관한 보고에는 독점협약의 참여사업자, 관련 상품 범위, 협의 내용 및 방법, 협의의 구체적인 이행 상황, 기타 해외 경쟁 당국에 대한 신청여부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 독점협약의 달성 또는 실행에 대한 중요한 증거. 중요 증거는 반독점법 집행기구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증거로 사건을 조사하거나 독점협약을 인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증거를 의미한다.

경영자의 법적 대리인, 주요 책임자 및 직접 책임자가 독점협약의 체결에 대한 개인 책임이 있는 경우,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38조 경영자가 본 규정 제37조에 따라 신청을 한 경우,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경영자가 주도적으로 보고한 시간 순서·제공한 증거의 중요 정도 및 독점협약의 달성·실시의 관련 상황에 근거하여, 처벌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제39조 성급 시장감독관리부서는 행정처분불가결정·조사중지결정·조사재개결정·조사종결 결정 또는 행정처벌 고지를 하기 전에 시장총국에 보고하고 시장총국의 지도와 감독을 수락한다.

성급 시장감독관리부서는 피조사경영자에게 행정처분불가결정서·조사중지결정서·조사재개결정서·조사종결결정서·또는 행정처벌결정서를 송달한 후 7 업무일 내에 시장총국에 보고하고 비치해야 한다.

제40조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행정처리결정을 한 후 법에 따라 사회에 공포한다. 그 중, 행정처벌정보는 법에 따라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

第四十一条 市场监管总局应当加强对省级市场监管部门查处垄断协议的指导和监督，统一执法程序和标准。

省级市场监管部门应当严格按照市场监管总局相关规定查处垄断协议案件。

第四十二条 经营者违反本规定，达成并实施垄断协议的，由反垄断执法机构责令停止违法行为，没收违法所得，并处上一年度销售额百分之一以上百分之十以下的罚款，上一年度没有销售额的，处五百万元以下的罚款；尚未实施所达成的垄断协议的，可以处三百万元以下的罚款。

经营者的法定代表人、主要负责人和直接责任人员对达成垄断协议负有个人责任的，可以处一百万元以下的罚款。

第四十三条 经营者组织其他经营者达成垄断协议或者为其他经营者达成垄断协议提供实质性帮助的，适用本规定第四十二条规定。

第四十四条 行业协会违反本规定，组织本行业的经营者达成垄断协议的，由反垄断执法机构责令改正，可以处三百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反垄断执法机构可以提请社会团体登记管理机关依法撤销登记。

第四十五条 反垄断执法机构确定具体罚款数额时，应当考虑违法

제41조 시장총국은 성급 시장감독관리부서의 독점협의 조사처리에 대한 지도와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법집행 절차와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

성급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엄격하게 시장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독점협의 안건을 조사처리해야 한다.

제42조 경영자가 본 규정을 위반하여 독점협의를 달성하고 실시하는 경우, 반독점 법집행기구는 위법행위의 정지를 명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전년도 매출액의 100분의 1 이상 100의 1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전년도 매출액이 없으면, 5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달성된 독점협의를 아직 실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영자의 법정대리인, 주요책임자 및 직접책임자가 독점계약 체결에 대한 개인책임을 지는 경우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43조 경영자가 다른 경영자를 조직하여 독점 협의를 체결하거나 다른 경영자가 독점 협의를 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경우 이 규정 제42조를 적용한다.

제44조 업계협회가 본 규정을 위반하여 업계 경영자를 조직하여 독점협의를 달성한 경우, 반독점 법집행기구가 시정을 명령하고 업계 협회에 대해 30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위가 엄중한 경우, 반독점 법집행기구는 사회단체등기관리 기관에 법에 따른 등기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제45조 반독점법 집행기구가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를 확정할 때

行为的性质、程度、持续时间和消除违法行为后果的情况等因素。

违反本规定，情节特别严重、影响特别恶劣、造成特别严重后果的，市场监管总局可以在本规定第四十二条、第四十三条、第四十四条规定的罚款数额的二倍以上五倍以下确定具体罚款数额。

第四十六条 经营者因行政机关和法律、法规授权的具有管理公共事务职能的组织滥用行政权力而达成垄断协议的，按照本规定第四十二条、第四十三条、第四十四条、第四十五条处理。经营者能够证明其受行政机关和法律、法规授权的具有管理公共事务职能的组织滥用行政权力强制或者变相强制达成垄断协议的，可以依法从轻或者减轻处罚。

第四十七条 经营者根据本规定第三十七条主动向反垄断执法机构报告达成垄断协议的有关情况并提供重要证据的，反垄断执法机构可以按照下列幅度减轻或者免除对其处罚：对于第一个申请者，反垄断执法机构可以免除处罚或者按照不低于百分之八十的幅度减轻处罚；对于第二个申请者，可以按照百分之三十至百分之五十的幅度减轻处罚；对于第三个申请者，可以按照百分之二十至百分之三十的幅度减轻处罚。

在垄断协议达成中起主要作用，或者胁迫其他经营者参与达成、实施垄断协议，或者妨碍其他经营者停止该违法行为的，反垄断执法机构不得免除对其处罚。

负有个人责任的经营者法定代表人、主要负责人和直接责任人

에는 위법행위의 성질·경위·정도·지속시간·위법행위 결과 제거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본 규정 위반의 상황이 특히 심각하고 영향이 특히 열악하며 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시장총국은 본 규정 제42조, 제43조, 제44조에 규정된 벌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로 구체적인 벌금액을 정할 수 있다.

제46조 행정기관 및 법률, 법규가 위임한 공무를 관리하는 기능을 가진 조직의 행정권력 남용으로 인해 경영자가 독점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 규정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에 따라 처리한다. 행정기관, 법률, 법규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업무를 관리하는 기능을 가진 조직이 행정권력을 남용하거나 위장하여 독점계약을 체결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는 법에 따라 처벌을 경감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제47조 경영자가 본 규정 제37조에 따라 독점협회의 관련 상황을 자발적으로 반독점법 집행기구에 보고하고 중요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다음 폭에 따라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첫 번째 신청자의 경우,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처벌을 면제하거나 80% 이상 감경할 수 있고, 두 번째 신청자의 경우 30~50%, 세 번째 신청자의 경우 20~30%의 범위에서 처벌을 감경할 수 있다.

독점 협의 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다른 경영자가 독점 협의 체결 및 시행에 참여하도록 협박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불법 행위를 중단하도록 방해하는 경우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처벌을 면제하지 않는다.

개인 책임을 지는 경영자의 법정대리인, 주요책임자 및 직접책임

员，根据本规定第三十七条主动向反垄断执法机构报告达成垄断协议的有关情况并提供重要证据的，反垄断执法机构可以对其减轻百分之五十的处罚或者免除处罚。

第四十八条 反垄断执法机构工作人员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或者泄露执法过程中知悉的商业秘密、个人隐私和个人信息的，依照有关规定处理。

第四十九条 反垄断执法机构在调查期间发现的公职人员涉嫌职务违法、职务犯罪问题线索，应当及时移交纪检监察机关。

第五十条 本规定对垄断协议调查、处罚程序未作规定的，依照《市场监督管理行政处罚程序规定》执行，有关时限、立案、案件管辖的规定除外。

反垄断执法机构组织行政处罚听证的，依照《市场监督管理行政处罚听证办法》执行。

第五十一条 本规定自2023年4月15日起施行。2019年6月26日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令第10号公布的《禁止垄断协议暂行规定》同时废止。

자가 이 규정 제37조에 따라 독점협약에 도달한 관련 상황을 자발적으로 반독점법 집행기구에 보고하고 중요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50%의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48조 반독점법 집행기구의 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사익을 위해 부정행위를 하거나 법 집행 과정에서 알게 된 영업 비밀, 개인 사생활 및 개인 정보를 누설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9조 반독점법 집행기구가 조사 기간 동안 발견한 공직자의 직무 위반 또는 직무 범죄 혐의 단서는 즉시 규율 검사 및 감독 기관에 인계해야 한다.

제50조 독점협약의 조사·처벌절차에 대해 본 규정이 규정하지 않은 것은 <시장감독관리행정처벌절차 임시규정>에 따라 집행하되, 시한·입안·안건관할과 관련된 규정은 제외한다.

반독점법 집행기구가 행정처벌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 <시장감독관리행정처벌청문 임시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제51조 본 규정은 2023년 4월 15일부터 시행된다. 2019년 6월 26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명령 제10호에서 공포한 '독점금지협정에 관한 잠정규정'은 동시에 폐지된다.